

기자브리핑 자료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브리핑 발언자료

일시 | 2025년 8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차

목차	2
<u>12.3 내란 재판 진행의 개괄 / 김태일</u>	3
<u>지귀연 재판부(형사합의25부)의 재판 진행상 문제점 / 손익찬</u>	12
<u>12.3 내란 특검의 향후 규명 과제 / 이지현</u>	21

12.3 내란 재판 진행의 개괄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1. 들어가며

12.3내란재판(이하 내란재판)은 가장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첫 공판기일인 지난 3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오늘까지 5개월간 진행되어왔다. 군사법원에서 진행중인 현직 군인들을 제외하고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등 8명이 3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고 있다. 내란재판은 12.3 내란의 실질적 종식 및 책임자들의 엄정한 처벌을 위한 첫걸음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의 눈에 비친 내란 재판의 진행은 초기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내세운 비공개 증인신문, 내란 피고인에 대한 특혜 논란 등으로 의구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문제점 진단과 향후 전망을 위해 이들 재판의 지금까지의 진행을 간략히 되돌아보며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윤석열은 계엄의 우두머리 혐의로써, 재판에 넘겨진 핵심 사실관계인 계엄 선포 및 국회 봉쇄, 중앙선거위 무력 점거와 선거인명부 서버 침탈 시도, 주요 정치인과 언론인 체포 명령에 모두 연루되어있다. 세 재판 중 가장 늦게 시작되어 준비기일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14차 기일이 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5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했다. 윤석열 재판의 지금까지의 공판 진행 일정과 증인신문, 주요 특이사항은 아래와 같다.

공판일	증인 신문	특이사항
2025.4.14.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윤석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 검찰 공소사실 전부 부정. 기존 주장 반복. 법리적으로 내란죄 요건 맞지 않다 주장. 국헌문란 목적 없었으며 짧은시간의 계엄이었으므로 피해 없고,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증거수집이므로 위법수집 증거 및 공소기각 주장.
2025.4.21.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윤석열,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 윤석열 내란죄 법리 부정.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사용했다는 것 만으로 내란죄

	1특전대대장	성립되지 않는다 주장. 의원 끌어내라는 주장 하지 않았으며 증인들의 기억력 의심하는 반대신문 하였으나 증인들 더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반박.
2025.5.12.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대위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윤석열, 법원 정문으로 출입.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들을 끌어내라” 등 지시 증언.
2025.5.19.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곽종근 사령관이 부하들을 향해 국회를 “확보”하라며 ‘유리창을 깨라’, ‘표결을 못하도록 의원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다는 증언 내용
2025.5.26.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 추가로 내용.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도끼로 문을 부수서라도 들어가라’ 지시. 민주당사에도 군대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
2025.6.9.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윤석열, “상부와 화상회의 중에 이런 지시를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받았단 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거니와 군에서 상부는 대통령을 의미한다는 것도 명백히 거짓말” 발언
2025.6.16.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윤석열이 계엄 해제 직후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거야?” 발언하고,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응, 상원아.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증언.
2025.6.23.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내란특검 박억수 특검보 공소유지 출석. 계엄해제의결 전후 합참 전통신 상황 증언. 권영환 증언, ‘계엄이 선포된다고 해도 모든 군부대가 자동으로 계엄임무수행군이 되지 않는다’, ‘계엄은 애초에 전시를 상정한 것이지 비전시 상황에 선포되는 계엄은 없다’ 등 증언 내용. 윤석열, 계엄에 대해 실무자들이 아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
2025.7.3.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윤석열 변호인, 내란특검이 공소유지하는 것 관련 사건의 ‘인계’와 ‘이첩’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문제 삼음.
2025.7.10.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	윤석열, 재구속 후 공판 불출석. 내란특검의 박억수 특검보가 재판 휴정기인 7월 28일부터 8월 8일 사이에도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특검 공소유지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대

2025.7.17.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	윤석열, 두번째 불출석. 변호인, 특검이 배제되지 않는 한 윤석열 출석 어렵다고 주장. 정성우 증인, 선거인명부 서버를 확보하라는 명령 관련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대통령과 (김용현)장관 지시라는 얘기를 명확히 했다”고 증언
2025.7.24.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 정 모 정보사령부 대령	윤석열, 세번째 불출석. 12월 1일 롯데리아 회동 당시 노상원이 선관위 직원들 대상 심문 계획을 논의하면서 “노태악(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담당해 진술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
2025.8.11.	김영권 특전사령부 방첩부대장 구상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	윤석열, 네번째 불출석. 권석재판 전환 김영권 증인, 윤석열과 곽종근 통화 증언. 해당 통화 이후 곽종근이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단전 등 언급.
2025.8.18.	이민수 중사, 이진우 수방사령관 운전수행 부사관	윤석열, 다섯번째 불출석. 증인, 이진우와 윤석열의 통화 증언. 윤석열이 통화에서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

윤석열 재판에서 지금까지 출석한 증인들은 모두 군인으로, 계엄 선포 직후 합참 지휘통제실 내에 있었던 간부들이나 이곳에서 내려진 지시에 따라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 혹은 출동명령을 받았던 간부들이다. 내란재판에 출석했던 대부분의 증인들은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윤석열과 직접 통화하면서 국회의사당 침탈과 선관위 침탈에 관한 지시를 한 사실을 증언했다.

형법상의 내란 우두머리는 국헌문란을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목적과, 내란 세력의 우두머리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성립한다(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현재까지 출석한 증인들과 현출된 증거들은 모두 12.3내란의 실질적인 우두머리가 윤석열이었으며, 그 목적은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선관위를 점거해 부정선거 증거를 조작하는 등 헌법이 정한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국헌 문란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요 증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증인 : 아직도 못들어갔냐’는 취지의 얘기를 피고인(윤석열)께서 하시고 이진우(수방사령관)은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에 접근할 수 없다’(고 답하자 윤석열이) ‘총을 쏘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5.12. 윤석열 3차 공판 오상배 증인)

검사 : 그럼 곽종근이 대통령님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말도 했나요?

증인 : 네 그렇습니다.

검사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문 부술만한 도구에 관해서 언급하기도 했나요?

증인 : 음.. 도끼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검사 : 곽종근이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말인가요?

증인 : 네. “도끼로라도”라는 말을 했던것 같습니다.

검사 : (곽종근이) ‘대통령님이 도끼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셨다’는 말을 했다는 건가요?

증인 : 네.

(5.25. 윤석열 4차 공판, 이상현 여단장

증인신문)

증인 : “(윤석열이 국회에 몇명 보냈는지 질문하자 김용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변한 뒤)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거야?”라고 하면서 국회법(법령집)을 찾으셨고, 결심지원실에서 나와 정책과장에게 국회법을 받아들어가서 국방비서관에게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증인 : (윤석열이) 회의 가시기 전까지는 결심지원실에서 여러 인원과 통화하셨습니다. 통화 인원 중에 “응 상원아, 이제 더이상 어떻게 하나?” 취지의 언급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6.16. 윤석열 7차 공판, 김철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증인신문)

증인 : 국회 근처를 여러 번 도는 중에 한 번, 현대백화점 인근 여의도 진지 주변에 도착했을 때 한 번, 이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첫 번째 통화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통화에서 총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검사 :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상대방 목소리를 직접 들은 것인가요?

증인 : 직접 들었습니다.

(8.18. 윤석열 13차 공판, 이진우 중사

증인신문)

이에 대해 윤석열 측은 내란의 실질적인 우두머리이자 구체적인 지시자가 자신이 아니며, 내란죄는 1인 독재 체제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를 위해 실행한 경고성 계엄이 내란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체적 진실과 내란죄의 법리를 모두 부정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출석한 증인들과 증언을 종합하면, 현재 윤석열 재판은 내란의 세가지 핵심적인 사실관계 중 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의 검증이 이루어졌고, 7월부터는 두번째로 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관련한 사실 관계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이후 경찰과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작전 관련한 검증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재판의 진행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반복되는 내란 피고 윤석열에 대한 특혜 대우 논란이다. 이미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기산하는 전례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해 국민적 충격과 분노는 물론이거니와 법조계 내에서도 강력한 반박에 직면했다.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 공판 기일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법원 지하 출입을 허용하고, 언론의 법정 내 촬영도 불허해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3차 공판부터 윤석열이 지상으로 출입하고, 언론의 촬영이 이루어지면서 일단락되기는 했으나, 이후에도 법원은 윤석열 재구속 후 특검 측의 강제구인 영장 발부를 거부하고 궤석재판을 진행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재판은 초기부터 계속 재판 방청객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당첨된 자에 한해 신분 확인을 거쳐 법정내 입장하게 하고 있다. 재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고 극성 윤석열 지지자들의 법원 밖 난동 우려 등 안전 상의 우려에 따라 이와 같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윤석열이 구속된 후 재판에 무단 불출석하면서 법원 근처 지지자들의 시위는 사실상 소멸된 상태이고, 방청에 당첨되고서도 출석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방청도 많아 더이상의 추첨 방청제 유지 필요성은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결심 선고까지는 추첨제를 중단하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게끔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 재판(2024고합1522)

김용현 등 군인 출신 민간인 3인에 대한 재판은 내란재판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소되었고, 공판 또한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주요 혐의사실은 사실상 윤석열과 대동소이하다. 3월 17일 1차 공판부터 현재까지 14회 공판이 진행되었으며, 비공개 신문을 포함하면 대략 13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해 신문을 진행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판일	증인 신문	특이사항
2025.3.17.	-	양측 모두진술. 김용현, 혐의 전부 부인. 비상계엄 정당화 주장. 검찰은 내란 수사권 없으므로 공소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
2025.3.27.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2025.4.10.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2025.4.18.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2025.4.24.	김 모 증인(정보사령부)	증인신문 비공개. 피고인측, 검찰이 추가제출한 증거 윤석열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채택에 부동의. 검찰측은 김용현 등의 내란죄의 목적, 국헌문란 목적 입증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측은 형사재판은 증거채택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반대.
2025.5.14.	신 모 증인(정보사령부)	증인신문 비공개
2025.5.23.	신 모 증인(정보사령부)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	신 모 증인 증인신문 비공개. 구삼회 증인 증인신문 공개로 전환.
2025.6.2.	구삼회 전 육군제2기갑여단장	노상원이 구삼회를 포섭한 과정과 12월 3일 롯데리아 회동 상황, 계엄 후 증거인멸 모의 정황 등 증언함.

2025.6.12.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계엄 직후 합참 전투통제실 상황 진술. 김용현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유임을 지시했다고 진술.
2025.6.26.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용현 추가구속영장 발부 후 공판. 변호인, 지귀연 재판부가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재판부에게 공소장이나 소송기록을 유출해준것 아니냐고 ‘공모’ 의혹 제기. 오영대 증인, 계엄 선포 직후 받은 지시문건에 수갑 등 물품 준비 등 김용현이 선관위 침탈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
2025.7.11.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 증인, 12월 3일 롯데리아 회동 관련 증언
2025.7.21.	김정재 정보사 통신계획담당관 이 모 박 모	선관위 점거 및 직원들 통제 당시 상황 진술
2025.7.25.	정 모 정보사 소령 출석	
2025.8.14.	안종현 중앙선관위 사무관 김 모 출석 이 모 출석	선관위 점거 후 추가투입된 특전사 부대 무장 상태 등 증언

김용현 재판의 경우 대부분의 피의사실이 윤석열과 중복된다. 관련해서 재판 초기부터 현재까지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선관위 장악 관련 모의와 실행이다. 증인으로 3차례의 ‘롯데리아 내란 모의 회동’의 참석자들이 먼저 순차적으로 출석하여, 계엄 모의, 그중에서도 선관위 장악 및 합동수사부 구성, 부정선거 수사 계획과 관련한 모의를 한 상황이 검증되었다. 7월 21일 공판부터는 중앙선관위 점거와 관련해서 당시 현장과 그 인근에 출동했던 군 간부들 및 현장에서 계엄군에 의해 억류되었던 선관위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김용현 등 재판의 경우, 재판 진행 초기부터 구설수가 있었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는 정보사 소속 현역 군인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이유만으로 첫 증인신문부터 5회에 걸쳐 사실상 공판 대부분의 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소속 기관(정보사령부)에서 비공개 신문을 전제로 법정 증언을 허용했으며, 비공개 신문을 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 효력이 사라진다는 논리로 비공개했다. 그러나 국가 안보상 민감한 신문사항만 사전에 미리 제한하거나, 증인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막을 설치하는 등 고려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 전체를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김용현 등 재판은 공판이 시작된 후

2개월여나 지나서야 증인신문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7월 하순 부터는 정보사령부 소속 증인의 증인신문에서 차폐막을 설치하고 공개신문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이 재판의 경우 재판 진행 지연의 문제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김용현 등이 구속된 시점이 12월 10일,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12월 27일로, 첫 공판이 기소 후 77일 후에나 이뤄졌고, 이미 이 시점에서 구속 기한의 절반 가까이가 경과했다. 뒤늦은 재판 개시에 더해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소송지휘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에도 이의제기를 남발하면서 재판 진행을 지연시켰고, 검찰의 공소 유지, 특검의 공소유지를 모두 불법이라 주장하며 억지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한 명의 증인 신문물을 완료하는데 2회 이상의 공판기일이 걸리는 일도 잦았다. 재판부 또한 김용현 등의 첫 구속영장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기한 내 선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특검보가 공소를 인계한 이후 신속한 재판을 위해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김용현 등의 재판은 특검에 의해 피고인들의 추가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아직 구속기간 만료까지 4개월 여의 시간적 여유가 있기는 하나, 그만큼 검증되어야 할 사실관계도 많이 남아있다. 정치인 체포 시도 관련 검증이나 국회 침탈 관련 검증은 각각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간부 재판이나 윤석열 재판에서도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계엄 비선 실세인 노상원 등의 구체적인 관여 과정 등에 대해서는 검증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노상원이 어떻게 군인들의 인사정보를 접하고 합동수사부 제2수사단을 구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공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예정된 기일은 12월 중순까지 17회가 남아있는데,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추가 기일이 지정되어 결과적으로 2026년으로 1심 선고가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추가구속된 김용현의 구속 만료 시점은 2025년 12월 26일로, 변호인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김용현이 다시 구속만료로 석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등 재판(2025고합51)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간부들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시도를 저지하고, 방첩사와 정보사의 선관위 점거 중에 외곽을 봉쇄해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와 여의도 일대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운 당시 국민의힘 대표, 언론인 김어준 씨 등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13차례의 공판일정이 진행되었고 19명 이상의 증인이 신문받았으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공판일	증인 신문	특이사항
2025.3.20.	-	검찰 변호인 모두진술. 변호인 측 혐의 모두 부인.
2025.3.31.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오부명 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증인들, 포고령 발동 이후 2차 국회 봉쇄 지시가 조지호와 김봉식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계엄군 국회출입 허용하도록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함.

2025.4.7.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박만식 서울경찰청 3기동단 기동대장	조지호 청장이 국회 출입 차단 지시를 받아 하급 단위에 관련 지시했고, 사전에 미리 계엄군 국회 투입 알고 있었다는 정황, 하급 부대들에 제대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출동시켰다는 점 증언함.
2025.4.16.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국수본 이현일에게 국회 체포조 관련 지원을 요청했다고 시인. 이에 이현일이 체포대상이 누구냐고 묻자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증언함. 또한 정치인 구금시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배했으며, 방첩사 지휘부가 체포명단 파기를 지시했다고 증언. 그러나 구 과장은 증거 파기를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넘김.
2025.4.29.	박창균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박창균 증인, 이현일 계장이 국회 체포조 2개 팀 올 것이니 인솔을 위해 형사 5명의 명단을 짜라고 지시했고, 사복을 입히라고 했다고 증언. ‘월 체포하는거냐’고 묻자, 이현일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핀잔 주듯 답했다고 증언. 그러나 이현일 계장은 오후에 증인 출석해 구민회에게 “이재명, 한동훈” 언급을 들은적이 없다고 진술.
2025.5.21.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증인, 구민회로부터 체포조를 지원할 형사 다섯명 요청받은 후, 윤승영 피고인에게 보고했으며, 윤승영은 조지호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함. 그러나 정치인 체포목적은 몰랐으며, 경찰 역할을 현장 인솔 정도로만 이해했다고 증언
2025.5.29.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과장 증인 출석	전창훈 증인, 이현일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한동훈 체포’라는 것에 대해 들은바 없고, 누구체포인지 확인해보라고 지시도 안했다고 증언.
2025.6.5.	신동걸 방첩사 방첩수사단 소령	신동걸 증인, 당일 국회로 출동했었으며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으로부터 경찰에게서 체포 대상 정치인들 신병을 인계받아 수방사로 보내라고 지시 받았다고 증언.
2025.6.18.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김대우 증인, 방첩사와 경찰의 협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취임하자마자 준비되었다고 증언. 또한 계엄 당일에 정치인 체포 명단을 하달받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부대원들에게 출동은 하되 경찰이 합류하기 전까지 단독으로는 작전 실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함. 합동수사단이 구성되기 전이어서 자신들은 민간인 체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합류하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증언.
2025.6.25.	이상민 국방부 조사본부 반부패수사단 수사팀장 백철기 수도권단 군사경찰단장	백철기 증인, 여의도에서 사람들이 체포되면 수방사 B1벙커 뿐 아니라 군사경찰단 미결수용실 수용자들도 다른곳으로 옮겨 그곳에 구금하려했다는 정황 증언.
2025.7.14.	김해인 수방사 군사경찰단 예방안전과장 이병하 영등포경찰서 강력4팀장	김해인 증인, 계엄 당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미결수용소의 수용자들이 감 준비해두라는 연락 받았다고 진술. 이병하 증인, 계엄 선포 후 상관 지시 받고 사복차림으로 국회 출동. 집회시위 관리 차원이라고 생각했고 정치인 체포목적 몰랐다고 증언.
2025.7.23.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처장 정동실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27기동대장 김성록 국회의장 경호대장	최현석 증인, 변호사 자격이 있었기에 김봉식 이 자신에게 계엄포고령 1호 관련 따라야 하는지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증언. 이에 증인은 포고령이 아닌 계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고 답했었다고 증언. 김성록 경호대장, 계엄 당시 우원식 경호하며 보고 들은 상황들 증언.
2025.8.13.	송 모 국회경비대 인사행정담당 김영호 국회경비대 부대장	증인 송 모씨, 서울경찰청과 국회경비대의 지휘에 따라 국회 출입문 폐문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 변호인들이 국회 울타리가 낮아 성인이 충분히 넘을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지만, 특검보의 질의에 평소 월당자는 검거대상이라며 최초 투입된 300명으로 국회 출입문 봉쇄가 가능하다고 증언함.

피고인들의 관여와 지시를 인정할 핵심증언이 많이 나온 다른 두 재판과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방첩사와 경찰의 국회체포조 협력 관련해서 출석한 증인들의 소속에 따라 증언 기조가 상반되면서 진실게임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인 체포 명단 언급과 정치인 체포작전 지시에 대해, 방첩사 소속 증인들은 모두 경찰이 정치인 체포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이 해당 정치인들을 체포하면 자신들이 인계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 소속 증인들은 모두 정치인 체포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체포에 협력할 형사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며, 자신들은 방첩사 등 군인들이 오면 길안내만 하는 정도의 역할로 이해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특히 국수본 실무자급 간부 중 방첩사로부터 형사 지원 요청을 처음으로 받은 이현일 계장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형사 인력 지원을 요청한 방첩사 구민회 과장은 이현일 계장이 체포대상이 누구냐고 물어서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현일 계장은 자신의 증인신문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체포대상이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현일의 연락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박창균 과장은 이현일이 통화 당시 체포 대상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이에 이현일 계장은

체포 대상이 누구지 알고있다는 듯이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현일 계장은 당일 현장에 모여든 시민들을 염두에 둔것이라고 진술했다.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의 체포조 협력 요청이 정치인 체포목적이라는 것을 알고도 응했다면, 이는 국수본이 조직적으로 내란의 한 역할을 맡았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상식적으로 수사기관인 국가수사본부가 방첩사로부터 체포 관련 지원 요청을 받으면서, 체포 대상이 누구인지 혐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들의 역할을 그저 군인들의 길안내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직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언을 회피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방첩사 측 간부들이 거짓증언을 할 이유도 없다. 현재까지 국수본 내부에서 정치인 체포목적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향후 공판이 진행되면서 군사재판을 받고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같은 고위급 간부의 증언이 필요해보인다.

7월 말까지 경찰 간부들 관련 재판은 정치인 체포조 및 국회 봉쇄 관련 해서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청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관련한 부분이 주로 검증되었다. 8월부터의 재판 진행은 목현대 국회경비대장의 혐의, 즉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지킨다는 본연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군들을 들여보냈던 것과 관련한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두 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전 용산대통령실에서 윤석열에게 구체적으로 받은 지시가 무엇인지 등 사전 모의 의혹이 검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귀연 재판부(형사합의25부)의 재판 진행상 문제점

손익찬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1. 내란 재판이 과도하게 지체되고 있음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도 함께 심리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느림
- 윤석열 사건만 전담하는 등의 방안을 통하여 최소 주3회 이상 심리 필요

<재판진행 속도 관련 : 윤석열 재판과 박근혜 재판의 비교>

	박근혜 국정농단재판(2017고합184)	윤석열 내란재판(2025고합129)
구속일	17년 3월 31일	25년 1월 19일
기소	17년 4월 17일	25년 1월 26일
공판준비기 일	17년 5월 2일, 16일 (간격 : 2주)	25년 2월 20일, 3월 24일 ⇒ 기록복사 어려움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김
정식공판	17년 5월 23일부터 18년 2월 27일까지 주 3회, 총 105차례 ⇒ 매일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음 ⇒ 여름휴정기2주간(7월24일~8월4일)) 8차례 ⇒ 연말연시2주간(12월26일~1월5일) 6차례	25년 4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 1회, 14차 진행 중 ⇒ 1주 1회는 직무유기 수준임 ⇒ 여름 휴정기에 재판을 쉼 ⇒ 1심 구속은 최장 6개월이므로, 재구속일(7월 10일)부터 6개월 지나면 석방됨(형소법 제92조)
선고일	18년 4월 6일 징역24년/벌금180억원	?

2.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권석재판을 너무 쉽게 허용함

가. 권석재판에 이르게 된 경위

- 3월 7일, 지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 4월 4일, 피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됨
- 7월 10일, 피고인 윤석열 재구속
- 이후 7월 17일, 24일, 8월 11일 3차례에 걸쳐 불출석함(건강상 이유)
- 특검 측은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강제구인을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서울구치소 측의 ‘보고서’를 근거로 강제구인을 하지 않고, 권석재판으로 진행함

나. 관련 규정의 검토

1) 강제 구인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 구속이란? 구인(拘引, 강제로 끌어옴)과 구금(拘禁, 강제로 가둠)의 의미가 있음.
따라서 구속 피고인은 재판에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함
- 다만, 이미 구속되어 신병이 확보된 상태의 피고인이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권석재판이 가능

2) 절차적 규정

- 권석재판 여부는 매번 결정되어야함. 따라서 매번 재판에 앞서 강제구인 시도가 있어야 하고, 불출석 사유 조사도 매번 있어야 함
- 그리고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보고서’만 받아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라 수명법관에 의한 조사 등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함
- ※ 강제구인이 인권침해(진술강제)이고 권석재판이 공판진행이나 유죄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1)**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권석재판이 허용되는 것은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점, **2)**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3. 피고인 김용현(*변호인) 측의 ‘법정 모독’에 관한 미흡한 대응

*변호인 :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 등

가. 현황

1) 25년 6월 25일(구속영장심사기일)

- 6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기가 되므로 하루를 더 벌기 위해 피고인 측이 법기술을 사용함(기일 변경요청, 기피신청 5차례 등)
- 변호인들의 발언 :
 - : 재판부에게 “불법 특검에 조력하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라”, “뭐가 그렇게 두렵나”, “지침을 받았는지 이미 결정하고 나왔는지 모르겠다”
 - : 특검 측에게 “이게 조은석(특검) 생각이나 아니면 김형수(특검보) 생각이나”, “특검보는 귀가 막혔나”, “특검보는 일이 없나, 왜 가만히 있나”, “(말을 하면) 입이 닳나 특검보는”

2) 25년 6월 26일(10차 공판) - 김용현 구속 연장된 다음날 공판

- 재판부에게, “불법구속된 우리 장관님한테 죄송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법원의 특별한 공모가 있지 않고는, 배당절차나 소송기록 공유나 누설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한다.”

3) 25년 8월 14일(14차 공판)

- “선관위 직원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네요? 검사들이 장관이랑 국무위원, 군사령관도 다 불러서 조사한 거 알아요? 근데 증인은 달달하네? 검사가 직접 출장을 왔네요.”
-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특검보는 왜 말을 못 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

나. 관련 규정의 검토

1) 법원조직법

-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함
- 재판장이 제재할 수 있는 경우?
 - : 재판장의 명령(법원조직법 제58조제2항 법정질서유지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경우

- :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경우
- 가능한 제재
 - : 즉시 구속 (단,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관한 재판 열어야 함)
 - : 20일 이내 감치
 - : 100만원 이내 과태료

2) 형법 제138조

- :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3) 사례

-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변호인의 변론행위를 부당하게 제약해서는 안 되지만, 정상적인 변론의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제재가 필요(심리방해, 위신훼손)
- 2003년 5월 22일 – 판사의 제지에도 계속하여 유도신문 : 10일 감치
- 법정모욕죄 –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선고를 마치기 전에 심판정 전체에 들릴 정도의 고성으로, “오늘로써 헌법이 정치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하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벌금 500만원)

4. 재판 공개의 필요성 (특히 영상중계 필요성)

가. 재판의 영상녹화 및 공개에 관한 근거

- 피고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한 피고인의 기본권임(헌법 제27조)
- 그런데 사법부도 심리.판결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헌법 제109조)
 - ⇒ 국가적 법익의 침해가 문제되는 내란 재판에 관해서는 국민도 알 권리가 있음
-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영상녹화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내란특검법에서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하고, 누군가의 신청이 없어도 재판 전부를 속기, 녹음 또는 영상녹화 해야 한다고 정함(법 제11조)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아니라 하위규정인 ‘규칙’에서 영상녹화된 내용의 공개근거를 정하고 있음
⇒ 즉 영상의 공개를 위해서 법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님

나. 이 사안의 경우

- 1) 모든 내란 재판은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고, 녹화된 내용을 공개해야 함 (생중계 또는 지연중계)
- 2) 생중계/지연중계 시행 이전까지 : 윤석열 내란 재판의 경우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작 법정을 꼭 채우지 못하고 있으므로,
⇒ 관행적으로 ‘추첨제’를 시행하기보다는 선착순으로 입정하되 중계법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내란재판의 경우 월요일인 점을 감안)
⇒ 추첨제를 유지하더라도, 당첨자가 개정시까지 오지 않으면 현장에 온 사람을 입정시키는 방안도 있음
⇒ 피해자의 진술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및 알 권리(제294조의4) 등을 감안하면, 고소.고발인의 대리인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원활한 법정 출입은 보장되어야 함

2.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권석재판을 너무 쉽게 허용함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의4(출석거부의 통지) 법 제277조의2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의5(출석거부에 관한 조사) ① 법원이 법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리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편집대표 노태악, “형사소송법 제3권”,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144~147면】

(인치 불가 관련)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원인은 묻지 않는다. 출석거부의 의사표시만을 한 것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석거부의 의사가 외부적 행동에 의해 표출되어야 한다. 예컨대 피고인이 출석거부의 목적으로 완전 나체상태를 한 경우나 유치장의 쇠창살 등을 잡고 항거하는 경우, 큰소리로 폭언을 하면서 저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단식투쟁의 결과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가 쇠약해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피고인의 출석거부에 따른 개정은 당해 공판기일의 절차에만 적용되므로, 각 공판기일마다 판단되어야 한다. 당해 기일의 공판절차인 이상 예정된 절차뿐만 아니라 다른 절차 즉 증거조사나 검사의 의견진술 등도 할 수 있고 판결의 선고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모두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기일에는 미리 예정된 절차만을 진행하고 각각의 다음 절차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석할 기회를 준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거부 조사 관련)

법원은 그 통지를 받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 기타 관계자의 출석을 명하여 진술을 듣거나 그들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법원은 출석거부의 사유, 조사를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3. 피고인 김용현(변호인)의 재판지연 의심행위에 관한 대응 미흡

가. 발언 현황

1) 25년 6월 25일(구속영장심사기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3290

2) 25년 6월 26일(10차 공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3673

3) 25년 8월 14일(14차 공판)

<https://www.khan.co.kr/article/202508160600011>

나. 관련 규정의 검토

3) 사례 – 2003년 5월 22일 관련 기사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40758&utm_source=chatgpt.com

【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참조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재판 공개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 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을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2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판기간 등) ③ 「법원조직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⑤ 해당 재판의 경우 재판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9조의2(변론영상 등의 공개) 헌법재판소는 변론 및 선고에 대한 녹음·녹화의 결과물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12.3 내란 특검의 향후 규명 과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1. 들어가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12.3내란재판은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하의 검찰이 공소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는 재판으로, 계엄 당일 계엄군의 국회 침탈, 중앙선관위 점거, 주요 정치인 및 언론인 체포 시도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란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기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특히 12.3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이하 내란특검)이 출범한 이후,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12.3 내란의 실체가 상당부분 여전히 베일에 감춰져 있음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초, 아직 기소되지 않은 내란 가담자들의 행적, 의혹, 발언들을 정리한 《내란열전 부역자를 기록하다》페이지를 오픈하고(<https://www.peoplepower21.org/naeran>) 내란특검이 규명해야 할 윤석열정부 국무위원과 경호처 간부 등 20명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https://www.peoplepower21.org/government/1996287>).

내란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이후 추가로 드러난 정황들을 바탕으로, 수사 재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과제들을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 : 참여연대가 정리 및 제출한 특검 수사대상 20명(당시 직책 기준)]

성명 및 당시 직책	의혹 및 혐의	수사 상황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피의자 신분 조사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내란 가담, 수사 방해	피의자 신분 조사중
조태열 외교부장관	내란 가담	참고인 신분 조사
김영호 통일부장관	내란 가담	참고인 신분 조사
박성재 법무부장관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피의자 신분 조사중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내란 가담, 수사 방해	구속 상태
송미령	내란 가담	참고인 신분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참고인 신분 조사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참고인 신분 조사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참고인 신분 조사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 가담, 수사 방해	피의자 신분 조사중
정진석 비서실장	내란 가담, 수사 방해	피의자 신분 조사중
강의구 부속실장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참고인 신분 조사
김주현 민정수석	수사 방해, 증거 인멸	피의자 신분 조사중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내란 가담, 수사 방해	참고인 신분 조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내란 가담, 증거 인멸	알려진 바 없음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내란 가담	참고인 신분 조사
박종준 경호처장	수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신분 조사중
김성훈 경호처 차장	수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 인멸	불구속 상태 입건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수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불구속 상태 입건

2. 윤석열정부 각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당시 받은 지시사항과 이행 여부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심의 국무회의에는 (당시 직책 기준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등 윤석열 외 국무위원들 10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 조사나 검찰수사, 탄핵심판에서 이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계엄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수사 결과 실제 계엄 심의 시간은 2분 남짓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의 당시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에게 받았던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도 참석자들은 문건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보지 못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회의 당시 회의공간 CCTV

기록이 드러나면서 국무위원들이 문건 형태의 지시사항을 받았고, 이행을 위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새롭게 검증되어야 할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의 계엄 심의 국무회의 관련 행적과 역할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의 소집 건의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한덕수는 계엄을 막기 위해 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족수가 채워지자 더 이상의 국무위원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의 건의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대접견실 CCTV에 대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포고령 문건을 받아 확인·검토하고 이를 회의 참석자들과 공람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덕수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오전 2시 경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요청을 받고서야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이 국회 가결 이후 오전 1시 16분부터 30여 분간 이른바 결심지원실 회의를 주재하면서 2차 계엄 시도가 논의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한덕수는 사태를 관망하다가 국무회의를 2시에서야 소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강외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은 국법상 행위인데 관련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와 김용현에게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한덕수는 여기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라면서 해당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문서를 조작해 계엄을 절차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려는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즉 한덕수는 본인의 해명과는 다르게,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중대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오늘 관련 혐의 등으로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수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2)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의 계엄 관련 법무부 지시 사항

박성재는 윤석열의 연락을 받고 비상계엄 선포 전에 우선 소집된 국무위원 중 한 명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 계엄 포고문의 법률검토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를 방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에는 법무부 청사로 이동해 11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법무부 간부회의를 진행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서 해야 할 일, 수용자 관리, 출입국 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무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 언론인들, 시민들을 체포한 후에 수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 경 진행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에 명백히 동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다음 날(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해서 비상계엄 수사 관련 후속 대책을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은 강의구 당시 부속실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총리와 국방부장관 서명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있는지 문의했고, 이것이 서명란이 포함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이 계엄의 사후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박성재 전 장관은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에 각각 한번씩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내란 가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내란 특검은 합수부 파견 지시 전달 경로 등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3.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당시 여당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도부는 11시 3분 경 의원 비상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알려진 바와같이 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11시 7분경 국민의힘 당사로 정정했습니다.

보도와 한동훈 당시 대표의 저서 등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의원이 그즈음 당 3층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는데, 즉각 국회로 가서 계엄을 막아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와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테니 의견을 들어보자며 원내대표의 명의로 계엄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즈음 윤석열이 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통화했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계엄선포 후 11시경 홍철호 수석과 통화하고, 한덕수 전 총리와 11시 12분 부터 7분 가량 통화를 했습니다. 11시 22분에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했고, 11시 26분에는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윤석열이 비상계엄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하면서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고 계엄 해제안 표결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후 11시 33분경 추경호 의원은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본인은 국회에 들어갔지만 12시 3분 경 다시 소집 장소를 당사 3층으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12시 38분에는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의힘 다수 의원이 국회 출입 통제로 들어오지 못하고 당사 등에 있는데,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국회 의결정족수가 거의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의결 정족수 151명이 충족된 시점은 추경호 의원이 우원식 의장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불과 2분 뒤입니다. 추경호 의원은 당시 계엄군을 지나쳐 국회 본청 건물 안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표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봤을때,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방해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의 계엄 전후 대화 내역이 삭제되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진상 은폐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해제는 국회의 해제 결의가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내란재판을 통해 윤석열과 계엄군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무력을 써서 끌어내려 했고, 의결 이후에도 즉각 계엄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 간부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까지 하는 등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볼 때 추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이것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할 여지가 큼니다.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